2024년 귀속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 기본내역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내역]

(소득 발생기간 : 2024년 01 ~ 06월)

■ 본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대근	710317-*******

■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내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득기준 초과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신서윤	020608-*******	Y

1. 조회일 현재 본인에게 자료제공 동의한 부양가족 중 상반기(1월~6월) 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한 대상자만 표시됩니다.

2. 상반기 소득금액은 근로·사업·기타·퇴직·양도(주식 제외) 소득의 합계액입니다.

일련번호 : 20250205-25153529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내역 [건강보험료]

(조회기간 : 2024년 01 ~ 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신대근	710317-*******

■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내역 (단위:원)

월별	보수월액(고지금액)		소득월액(납부금액)	
	건강보험료①	장기요양보험료②	건강보험료③	장기요양보험료④
01월	157,350	20,370	0	0
02월	157,350	20,370	0	0
03월	157,350	20,370	0	0
04월	170,940	22,130	0	0
05월	170,940	22,130	0	0
06월	170,940	22,130	0	0
07월	170,940	22,130	0	0
08월	170,940	22,130	0	0
09월	170,940	22,130	0	0
10월	170,940	22,130	0	0
11월	170,940	22,130	0	0
12월	170,940	22,130	0	0
연말정산	191,610	24,540		
합계	2,202,120	284,820	0	0
총합계	2,486,940			

1. 보수월액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 (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에는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
2. 소득월액 보험료 :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

일련번호 : 20250205-25153529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 증명서류 : 기본내역 [고용보험료]

(조회기간 : 2024년 01 ~ 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대근	710317-*******

■ 고용보험료 고지내역 (단위:원)

월별	고지금액
01월	39,940
02월	39,940
03월	39,940
04월	92,020
05월	43,390
06월	43,390
07월	43,390
08월	43,390
09월	43,390
10월	43,390
11월	43,390
12월	43,390
합계	558,960

1. 고지금액 : 근로복지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실제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급액입니다. (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
2. 시점에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3. 건설업, 벌목업 사업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일련번호 : 20250205-25153529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국민연금보험료]

(조회기간 : 2024년 01~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신대근	710317-*******

■ 국민연금보험료 내역 (단위:원)

월별	직장가입자 고지금액	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
01월	196,960	0
02월	196,960	0
03월	196,960	0
04월	196,960	0
05월	196,960	0
06월	196,960	0
07월	214,020	0
08월	214,020	0
09월	214,020	0
10월	214,020	0
11월	214,020	0
12월	214,020	0
직장가입자 소급고지금액	0	
추납보험료 납부금액		0
실업크레딧 납부금액		0
합계	2,465,880	0
총합계		2,465,880

1. 직장가입자 고지금액 : 국민연금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 (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

※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근로자는 해당 지원금이 공제된 금액으로 월별 고지금액이 제공되며, 지원금 공제 시점에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2.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

일련번호 : 20250205-25153529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조회기간 : 2024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신대근	710317-*******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종류	상 호 / 사업자번호 / 종피보험자1(수익자)		보험종류 / 증권번호 / 종피보험자2(수익자)		주피보험자 / 종피보험자3(수익자)		납입금액 계
보장성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무) All New리치하우스가정종합				600,000
	104-86-39719		319127*****		710317-*******	신대근	
	710317-*******	신대근					
보장성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무) NH간편해진치매플러스보험[				1,415,040
	104-86-39719		319087*****		710317-*******	신대근	
보장성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무) NH더간편해진치매플러스보				2,002,800
	104-86-39719		319136*****		710317-*******	신대근	
보장성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무) NH베스트간병보험[1종:표준				251,608
	104-86-39719		319149*****		710317-*******	신대근	

1. 공제 대상 :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2. 공제 한도 : 100만원

일련번호 : 20250205-25153529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조회기간 : 2024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신대근	710317-*******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종류	상 호 / 사업자번호 / 종피보험자1(수익자)	보험종류 / 증권번호 / 종피보험자2(수익자)	주피보험자 / 종피보험자3(수익자)		납입금액 계
보장성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무) 꿈모아어린이보험1804			720,000
	104-86-39719	319047*****	020608-*******	신서윤	
보장성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무) 헤아림생활안전보험1501			600,000
	104-86-39719	319017*****	710317-*******	신대근	
보장성	현대해상화재보험 (주)	무배당계속받는암보험 (Hi1401)1?			732,000
	102-81-32035	L01404*****	710317-*******	신대근	
보장성	현대해상화재보험 (주)	무배당계속받는암보험 (Hi1501)2?			370,080
	102-81-32035	L01514*****	020608-*******	신서윤	

1. 공제 대상 :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2. 공제 한도 : 100만원

일련번호 : 20250205-25153529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조회기간 : 2024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신대근	710317-*******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종류	상 호 / 사업자번호 / 종피보험자1(수익자)		보험종류 / 증권번호 / 종피보험자2(수익자)		주피보험자 / 종피보험자3(수익자)		납입금액 계
보장성	현대해상화재보험 (주)		무배당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H				156,240
	102-81-32035		L02310*****		710317-*******	신대근	
보장성	현대해상화재보험 (주)		무배당실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				330,140
	102-81-32035		L02133*****		710317-*******	신대근	
보장성	현대해상화재보험 (주)		무배당퍼펙트N종합보험(Hi1308)				987,920
	102-81-32035		L01321*****		020608-*******	신서윤	
보장성	현대해상화재보험 (주)		무배당퍼펙트치아보험(Hi1801)				387,720
	102-81-32035		L01803*****		020608-*******	신서윤	

1. 공제 대상 :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2. 공제 한도 : 100만원

일련번호 : 20250205-25153529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조회기간 : 2024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신대근	710317-*******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종류	상 호 / 사업자번호 / 종피보험자1(수익자)	보험종류 / 증권번호 / 종피보험자2(수익자)	주피보험자 / 종피보험자3(수익자)	납입금액 계
보장성	현대해상화재보험 (주)	무배당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세?		837,960
	102-81-32035	L02310*****	710317-******* 신대근	
보장성	현대해상화재보험 (주)	무배당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Hi1		246,960
	102-81-32035	L01825*****	710317-******* 신대근	
보장성	현대해상화재보험 (주)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Hi0710)		1,943,760
	102-81-32035	L20079*****	710317-******* 신대근	
보장성	현대해상화재보험 (주)	무배당현대해상간편한3.10.10건?		120,930
	102-81-32035	L02452*****	710317-******* 신대근	

1. 공제 대상 :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2. 공제 한도 : 100만원

일련번호 : 20250205-25153529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조회기간 : 2024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신대근	710317-*******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종류	상 호		보험종류				납입금액 계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수익자)		종피보험자2(수익자)		종피보험자3(수익자)		
보장성	현대해상화재보험 (주)		하이카 개인용				687,310
	102-81-32035		M2024F*****		710317-*******	신대근	
인별합계금액			12,390,468				

1. 공제 대상 :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2. 공제 한도 : 100만원

일련번호 : 20250205-25153529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조회기간 : 2024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신서윤	020608-*******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종류	상 호		보험종류				납입금액 계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수익자)		종피보험자2(수익자)		종피보험자3(수익자)		
보장성	현대해상화재보험 (주)		무배당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H				297,480
	102-81-32035		L02328*****		020608-*******	신서윤	
인별합계금액			297,480				

1. 공제 대상 :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2. 공제 한도 : 100만원

일련번호 : 20250205-25153529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의료비]

(조회기간 : 2024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신대근	710317-*******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2-96-02*	허*****	일반	60,600
2-08-36*	명*****	일반	33,440
0-09-88*	원*****	일반	30,300
0-05-56*	강*****	일반	72,000
1-97-00*	연*****	일반	21,600
5-56-00*	영*****	일반	506,05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723,99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723,990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6세 이하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일련번호 : 20250205-25153529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의료비]

(조회기간 : 2024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신서윤	020608-*******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1-10-42*	다*****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288,000
6-14-81*	오*****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74,000
1-06-82*	오*****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15,000
6-61-00*	학*****	일반	5,500
3-99-16*	학*****	일반	5,200
9-35-01*	하*****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25,000
9-14-02*	학*****	일반	15,400
2-93-01*	엠*****	일반	11,700
8-12-02*	오*****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15,0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37,80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417,000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454,800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6세 이하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일련번호 : 20250205-25153529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내역
[실손의료보험금]

(조회기간 : 2024년 01~12월)

■ 피보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신대근	710317-*******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 (단위:원)

상호	상품명	보험계약자		수령금액 계
사업자번호	계약(증권)번호	수익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	무배당실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	710317-*******	신대근	25,600
102-81-32035	L02133*****	710317-*******	신대근	
인별합계금액				25,600

1.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제받아야 합니다.

일련번호 : 20250205-25153529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사용처별)내역
[신용카드]

(조회기간 : 2024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신대근	710317-*******

■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3년 사용금액 합계	2024년 사용금액 합계
14,650,020	12,245,90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11,383,000	775,000	87,900	0	12,245,900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신용카드	104-86-39742	농협은행 주식회사	일반	10,676,230
신용카드	104-86-39742	농협은행 주식회사	전통시장	775,000
신용카드	104-86-39742	농협은행 주식회사	대중교통	87,900
신용카드	120-81-54231	롯데카드 주식회사	일반	695,970
신용카드	202-81-48079	신한카드 주식회사	일반	10,800
인별합계금액		12,245,900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 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250205-25153529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사용처별)내역 [직불카드 등]

(조회기간 : 2024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신대근	710317-*******

■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3년 사용금액 합계	2024년 사용금액 합계
32,737,110	32,013,47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31,212,790	714,680	86,000	0	32,013,470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직불카드 등	104-82-0707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일반	25,000
직불카드 등	214-81-37726	비씨카드 (주)	일반	31,187,790
직불카드 등	214-81-37726	비씨카드 (주)	전통시장	714,680
직불카드 등	214-81-37726	비씨카드 (주)	대중교통	86,000
인별합계금액		32,013,470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250205-25153529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현금영수증]

(조회기간 : 2024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신대근	710317-*******

■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3년 사용금액 합계	2024년 사용금액 합계
6,380,941	712,491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주택임차료 거래	합계금액
712,491	0	0	0	0	712,491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불복·제보>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2.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주택임차료(월세) 거래분은 일반거래금액으로 계산함

일련번호 : 20250205-25153529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현금영수증]

(조회기간 : 2024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신대근	710317-*******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종류	월별 공제대상금액				공제대상금액
		01월	02월	03월	04월	
		05월	06월	07월	08월	
		09월	10월	11월	12월	
현금영수증	일반거래	123,130	47,202	11,300	267,900	712,491
		45,900	21,900	85,630	21,900	
		21,900	21,929	21,900	21,900	
현금영수증	전통시장거래	0	0	0	0	0
		0	0	0	0	
		0	0	0	0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불복·제보>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2.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주택임차료(월세) 거래분은 일반거래금액으로 계산함

일련번호 : 20250205-25153529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기부금]

(조회기간 : 2024년 01~12월)

■ 기부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신대근	710317-*******

■ 기부금 지출내역

(단위:원)

사업자번호	단체명	기부유형	기부금액 합계	공제대상 기부금액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	*****1	정치자금기부금	12,000	12,000	0
인별합계금액					12,000

※ 기부금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기부금액이 조회됩니다.

1. 공제 대상 :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련번호 : 20250205-25153529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